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06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최형두 · 천하람 · 김기현
정점식 · 김소희 · 김재섭
박준태 · 조정훈 · 정동만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 중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

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임.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

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료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료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료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중소형원자료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료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형원자료, 활용시스템, 중소형원자료시스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료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료시스템 진흥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료시스템 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진흥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함(안 제9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우선처리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2. “중소형원자로”란 모듈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5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시스템”이란 중소형원자로와 결합 또는 연계하는 부대 시설과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치를 말한다.
4.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이란 중소형원자로와 활용시스템을 말한다.
5. “원전기업”이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 실증 · 운영 · 해체 업무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술 용역 제공

업무를 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출사업자”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을 수출하려는 자를 말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사업투자회사와 수출사업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이하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또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원전기업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내외 인허가를 적기에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출사업자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해외 마케팅 및 국제협력 활동 등을 통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 진흥계획

제6조(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 진흥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2.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추진전략과 이행방안
3.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전망
5.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6.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7.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8. 그 밖에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 이행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금융 및 국제협력 분야 등의 제도개선, 관계 법령의 제·개정,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종합 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장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

제9조(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 ①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진흥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금융재정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중소기업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수출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중소기업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0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기회의 시기 등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 기반 조성

제12조(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의결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형원자로시스템과 관련 제도의 해외 동향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
 2.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3.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인허가 지원을 위한 시험·실험·해석·분석 및 국제공동연구
 5.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 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단체 등(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을 소유한다. 다만, 수출사업자, 민간기업 및 발전용원자로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부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사항 등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출 촉진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수출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사업에 대하여 수출여신 한도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여신과 보증의 한도와 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수출여신 한도와 보증 한도를 확대한 수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정 보증, 출자 등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3.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보급·확산 및 수출사업자 지원

제19조(투자 활성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의 연구개발·설계·기자재 제작·건설·원전연료 공급망 및 수출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기업이나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형원자로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원전기업이나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원전기업이나 수출사

업자에게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4. 그 밖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안정적인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생태계 구축, 미래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 신속처리 특례) ① 수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3. 그 밖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진흥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